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1. ~ 10. 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4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현행 정부조직법과 맞지 않는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와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

2. 주요내용

-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반영
 - 중소기업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
 - 구좌→계좌, 납골당→봉안당, 계리→회계처리, 사리도→자갈도로, 행선지→목적지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정부조직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6. ~ 9. 2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11.(기획예산실-1153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6.(순천시 공고 제2019-1748호)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부처명칭 정비

제1조(「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장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

제5조(「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6조(「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납골당” 을 “봉안당” 으로 한다.

제7조(「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리” 를 “회계처리” 로 한다.

제18조 제목 및 본문 중 “계리” 를 “회계처리” 로 한다.

제8조(「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사리도” 를 “자갈도로” 로 한다.

제5조 중 “구좌” 를 “계좌” 로 한다.

제9조(「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바목 중 “행선지” 를 “목적지” 로 한다.

제10조(「순천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순천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 를 “회계처리” 로 한다.

제19조 제목 및 각호 외 부분 중 “계리” 를 “회계처리”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부처명칭 정비

○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u>중소기업청장</u> ,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 광주·전남지방 <u>중소기업청장</u>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 ②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생략) 2. <u>중소기업청장</u> 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은 <u>농림수산식품부장관</u> 에게 품종보호출원을 제출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u>농림수산식품부장관</u>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 ----- <u>농림축산식품부</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농림축산식품부</u> ----- ----- ----- -----.

○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u>국토해양부장관</u> 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략)	제25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해양수산부</u> ----- ----- ----- ----- ----- -----. ③ (현행과 같음)

□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

○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u>구좌</u> 에 입금한다. ② (생략)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 <u>계좌</u> -----. ②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u>납골당</u> 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 ----- ----- <u>봉안당</u> ----- ----- ----- -----.

○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출자) ① (생략)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계리</u> 한다. ③ ~ ④ (생략)	제10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회계처리</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u>계리</u>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u>계리</u>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 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8조(<u>회계처리</u> 상황의 보고) ----- ----- <u>회계처리</u> ----- ----- ----- -----. 1. ~ 5. (현행과 같음)

○ 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담금징수)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 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u>사리도</u> 의 굴착복구는 원 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징수) ① ----- ----- ----- ----- ----- <u>자갈도로</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교통 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 서 도로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세입세출 외 현금 <u>구좌</u> 에 예치하여야 하며 복구절차 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한다. 다만, 돌발적 으로 발생하거나 예산의 성립지연 등으로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민원이나 교통의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세입 세출외 현금 <u>구좌</u> 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예산) ----- ----- ----- ----- <u>계좌</u> ----- ----- ----- ----- ----- ----- <u>계좌</u> -----.

○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	10. ----- -----

현 행	개 정 안
가. ~ 마. (생략) 바. 버스 <u>행선지</u> 안내판 시설 확충 및 관리 11. ~ 15.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u>목적지</u> ----- ----- 11. ~ 15. (현행과 같음)

○ 순천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출자) ① (생략)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 자금으로 <u>계리</u> 한다. ③ ~ ④ (생략) 제19조(<u>계리</u>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u>계</u> <u>리</u>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 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1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회계처리</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u>회계처리</u> 상황의 보고) ----- ----- <u>회계</u> <u>처리</u> ----- ----- -----. 1. ~ 5. (현행과 같음)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4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제정
-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심의를 위한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9. 30.)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18.(여성가족과-18858)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8.(기획예산실-11301)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0.(순천시 공고 제 2019-1721호)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4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담인력 운영 지침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
- '20. 1월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총 정원) 1,478명 → 1,480명 / * 2명 증 (단위 : 명)

구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고
			계	증원	감원	
총계	1,478	1,480	2	2	0	
정무직	1	1	-	-	-	
일반직	1,440	1,442	2	2	-	6급 이하 2
별정직	1	1	-	-	-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10. 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18.(여성가족과-188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6.(기획예산실-112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1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78명”을 “1,4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53명”을 “1,45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480	1,480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42	1,442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2	3	6	12	24
6급이하 계	1,353	1,353				
별정직 계	1	1				
6급상당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478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53명</u>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u>1,480명</u> ----- 1. ----- : <u>1,455명</u>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u>1,478</u>	<u>1,478</u>					총 계	<u>1,480</u>	<u>1,480</u>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440</u>	<u>1,440</u>					일반직 계	<u>1,442</u>	<u>1,442</u>				
3급	1	1					3급	1	1				
4급	11	5	1	2	3		4급	11	5	1	2	3	
5급	77	31	3	6	<u>13</u>	24	5급	77	<u>32</u>	3	6	<u>12</u>	24
6급 이하 계	<u>1,351</u>	<u>1,351</u>					6급 이하 계	<u>1,353</u>	<u>1,353</u>				
별정직 계	1	1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직 계	7	7				
연구관							연구관	<u>1</u>				<u>1</u>	
연구사	<u>7</u>	<u>7</u>					연구사	<u>6</u>	<u>6</u>				
지도직 계	29	29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지도사	27	2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정원의 증감 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			비고
	4급	5급	6급 이하	
2	-	-	2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 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고
일반직	9급	38,202,130	2명	76,404,260	4호봉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9급 (4호봉)	비고
총계(①+②+③)	38,202,130	
①인건비(A+B)	26,914,650	
·기본급(A)	20,422,800	
·수당(B)	6,491,850	
-정액급식비	1,560,000	
-명절휴가비	2,042,280	
-연가보상비	585,450	
-정근수당	680,760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수당(정액분)	1,023,360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②직급보조비	1,740,000	
③이전경비	9,547,480	
-성과상여금	2,209,000	
-연금부담금	5,239,920	
-국민건강보험금	1,934,160	
-장기요양보험금	164,400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정영고(☎ 749-5457)

총무과 인사팀장

김영남(☎ 749-563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4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민선7기 조직개편 이후,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신규업무 추가
-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추가 등

2. 주요내용

- 부서 간 업무 조정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업무 소관 조정 : 일자리경제국 → 안전도시국
 - 방문보건, 행복24시 통합보건서비스 운영 업무 삭제
- 신규업무 추가
 - 문서고 운영 및 기록물 관리 업무 추가: 자치행정국
-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 : 자치행정국 산하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도시과장(도시과) 의견
 - 현재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등의 업무가 산업단지 등의 조성업무는 도시과, 산업단지 육성, 관리·운영 업무는 투자일자리과,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4차산업체험 클러스터 단지 기반조성업무는 미래산업과에 3원화 되어 있는 상황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자일자리과에 기술직렬을 추가로 배치하여 산업(농공)단지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함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10. 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18.(여성가족과-1887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6.(기획예산실-1134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19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통신과를”을 “정보통신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을”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부터 제3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서고 운영 및 기록물 관리

제6조제2항제17호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22호를 삭제하고,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를 제22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산업(농공)단지 개발” 다음에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생략)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 (생략) 13. <u>시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u>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1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정 <u>보통신과를 둔다.</u>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생략) <신 설> 4. ~ 36. (생략)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정 <u>보통신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을 -----.</u> ② -----. 1.~3. (현행과 같음) 4. <u>문서고 운영 및 기록물 관리</u> 5. ~ 37. (현행 제4호부터 제36호까지와 같음)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6. (생략) 17. <u>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초경량 마그네슘 육성 사업</u> 18.~19. (생략)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1.~16. (현행과 같음) 17. <u>초경량 마그네슘 육성 사업</u> 18.~19. (현행과 같음)
제8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1. (생략) 22. <u>방문보건, 행복24시 통합보건서비스운영</u> 23. ~ 32. (생략)	제8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1.~21. (현행과 같음) <삭 제> 22. ~ 31. (현행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와 같음)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략) 8. <u>도시개발, 산업(농공)단지 개발</u> 9.~34.(생략)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1.~7. (현행과 같음) 8. <u>도시개발, 산업(농공)단지 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u> 9.~34.(현행과 같음)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4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 (2018. 11.)」 권고내용 반영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등

2. 주요내용

- 조례의 이념성, 방향성을 나타내는 “민간위탁 촉진”을 삭제하고 관리에 중점을 둔 제명 반영(조례 명칭 변경)
- 위탁사무, 재위탁, 재계약 등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적정성 검토사항 명시(제4조, 제5조)
- 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명시(제6조, 제7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명시(제8조, 제9조)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0조, 제11조, 제12조)
-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명시(제13조, 제14조, 제15조)
- 수탁기관의 의무, 사무편람 비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7조, 제18조, 제19조)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성과평가, 재계약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10. 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23.(여성가족과-1922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9.(기획예산실-1139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20호)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8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사무의 목적, 내용 및 정해진 조건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위탁사무의 내용 또는 위탁사무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탁사무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3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수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4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자원봉사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공익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봉사자 자긍심 고취 및 나눔 배려 문화 확산
- 전라남도 및 순천시 우수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주요내용

- 자원봉사 기본교육 이수 및 누적 자원봉사기간 100시간 이상자에 대해 순천시 자원봉사자증 발급 규정 신설(제18조)
- 자원봉사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산금을 공익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19조)
- 순천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자증” 및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조항 신설(제20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8. 5.(여성가족과-1629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5.(기획예산실-980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6.(순천시 공고 제2019-1471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시장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자원봉사 기본교육 이수 및 봉사시간 누적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①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이 전년도 개인기준 100시간 이상, 단체기준 200시간 이상일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하여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산금을 다음 각 호에 기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② 기부는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기관·단체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봉사 1시간 당 현금 환산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3.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관람료 면제
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및 주차료 면제
6.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제7호에 따른 입장료 면제

②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우수봉사자에게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장료 면제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3.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관람료 경감
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경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8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시장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자원봉사 기본교육 이수 및 봉사시간 누적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①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이 전년도 개인기준 100시간 이상, 단체기준 200시간 이상일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하여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산금을 다음 각 호에 기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② 기부는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기관·단체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봉사 1시간 당 현금 환산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3.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u>제5조 관람료 면제</u> 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및 주차료 면제 6.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제7호에 따른 입장료 면제 ②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우수봉사자에게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장료 면제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3.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관람료 경감 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경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u>제18조</u> (생략)	<u>제21조</u> (현행 제18조와 같음)
<u>제19조</u> (생략)	<u>제22조</u> (현행 제19조와 같음)
<u>제20조</u> (생략)	<u>제23조</u> (현행 제20조와 같음)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18조(봉사 마일리지 환산금 기부) ①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누적 마일리지(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환산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부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년도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

마일리지(시간)	100시간초과	200시간초과	300시간초과	400시간초과	500시간초과	1000시간초과
인원(명)	1,610	604	103	94	47	4

- 환산금 : 1시간 당 500원 (환산 최대 한도 1,000천원)
- 내 용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마일리지(시간)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부처에 기부하고자 할 경우 마일리지(시간)를 1시간당 금500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부처에 지급
- ※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시 당해연도 사업 마무리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80,000	-20,000	-20,000	-40,000	-40,000	-60,000
세입(a)						
세출(b)	180,000	20,000	20,000	40,000	40,000	6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180,000	20,000	20,000	40,000	40,000	60,000
시 비	180,000	20,000	20,000	40,000	40,000	6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20,000천 원

○ 산출기초

• 마일리지(시간) 환산금 : 500원(1시간)×2,000시간(최대)×20명 = 20,000,000원

※ 자원봉사 마일리지(시간) 기부제가 활성화 될 시 연차별 예산 확대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과장 조태훈(☎749-5453)

시민참여팀장 방수진(☎749-5595)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주민참여 사업 민간위탁 근거 마련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능 및 운영방법 정비

2. 주요내용

- (제8조 사업공모) 주민참여 사업 위탁 근거 마련
 -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및 지원 원칙, 단 민간 운영 시 활성화가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제26조 지원센터 기능)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 정비

현행	개정안
▪ 지원센터 운영·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 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 지원센터 자체 공모사업 또는 시가 위탁한 공모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홍보 ▪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육성 지원 ▪ 사업 주체, 기업, 국내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 마을 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업 ▪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연구 및 사업화 ▪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8조 운영방법 등)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전환 대비, 위탁 가능 대상 확대 및 위탁기간 조정
 - (대상) 법인 운영, 비영리법인 위탁 →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 (위탁기간) 2년 → 3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18.(여성가족과-1887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6.(기획예산실-9884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2.(순천시 공고 제2019-1493호)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를 “선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항
6.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7.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8.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연구 및 사업화
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 본문 중 “둘 수 있다”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재위탁 할 수 있다.”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과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공모) 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사업공모 등) ① ----- ----- 선정한다.
② ~ ③ (생략)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6조(기능)----- -----.
1. 지원센터 운영·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지원센터 자체 공모사업 또는 시가 위탁한 공모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홍보	3.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육성 지원	4. 마을공동체 사업의 계획 수립·실행 지원
5. 사업 주체, 기업, 국내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업
6.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6.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7. 마을 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8.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에 관한 사항	8.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연구 및 사업화
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지원센터조직 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지원센터조직 등) ----- -----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28조(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위탁기간은 <u>2년</u> 으로 하되, <u>재위탁</u>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② 위탁기간은 <u>3년</u> 으로 하되, <u>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과평가 후 재위탁</u>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
-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제7조) 개정
 - 위원장을 위촉직 호선에서 부시장으로 변경
- 여성의 건강증진 지원사항 추가(제24조)
 - 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보건위생 필수 물품 공공시설 비치 (안 제24조 3항, 4항)
-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용 사항 신설(안 제34조~ 안 제41조)
 - 기금의 설치, 용도, 심의, 관리·운용, 결산보고, 결정 취소 등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9. 3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30.(여성가족과-19698)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10.(기획예산실-1144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28호)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2.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양성평등 및 여성일자리, 여성안전 민간 전문가
4. 여성친화도시 조성 민간 전문가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복지증진”을 “여성복지 및 건강증진”으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가임기 여성에 필요한 보건위생 물품을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를 제42조로 하고, 제7장(제34조부터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용

제34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복지·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6조의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3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②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해야 한다.
- ③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④ 운용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집행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제38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3.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
-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팀장
-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40조(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 등이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 <u>구성하되,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②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 1. <u>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u> 2. <u>순천시회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u> 3. <u>양성평등 및 여성일자리, 여성안전 민간 전문가</u> 4. <u>여성친화도시 조성 민간 전문가</u> 5.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u> 〈삭 제〉
③ <u>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u>	
④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복지증진) ①~② (생략)	제24조(여성복지 및 건강증진)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가임기 여성에 필요한 보건위</u>

현행	개정안
<신설>	<u>생물품을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신설>	<u>제7장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영</u>
<신설>	<u>제34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복지·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u> <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시의 출연금</u> <u>2. 기금의 운용수익금</u> <u>3. 기타 수입금</u> <u>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신설>	<u>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한다.</u> <u>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u> <u>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u> <u>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u> <u>4. 법 제2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u> <u>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6조의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u> <u>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u> <u>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u> <u>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u>
<신설>	<u>제3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u> <u>②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해야 한다.</u> <u>③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u> <u>④ 운용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집행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u>
<신설>	<u>제38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u> <u>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신설>	3.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제40조(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41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

현행	개정안
제34조 (생략)	<u>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u> 4. <u>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 등이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 5. <u>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② <u>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u> <u>제42조 (현행과 같음)</u>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주말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휴관일 명시
-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 및 의사상자에 대한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
 -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지정 가능
- 이용료 면제 대상 범위 확대 및 추가
 - (대상자 범위 확대) 청소년→ 수급자, 장애인 등 해당 법률 적용 대상자
 - (면제대상 추가)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중 소지자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8. 20.(여성가족과-1711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14.(전략기획과-1025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6.(순천시 공고 제2019-1545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급자인 청소년”을 “수급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을”을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을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
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별표 2의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 및 기능에 다음을 신설한다.

-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예방 교육 운영
- 성인지적(성평등 등 포함) 통합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구축 관리
-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 허브 역할 수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운영시간) ① ~ ② (생략) 〈신설〉	제6조(운영시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u>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생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u>수급자인 청소년</u>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u>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u> 라. (생략) 마.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u>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u> 바. 「장애인복지법」에 <u>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u> 사. (생략) 〈신설〉 〈신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 ----- ----- ----. 1. 면제 가. (현행과 같음) 나. ----- <u>수급자</u> 다. ----- ----- <u>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u> 라. (현행과 같음) 마. ----- <u>지원대상자</u> 바. ----- <u>따른</u> ----- ----- <u>장애인</u> 사. (현행과 같음) 아.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을 소지한 세대주 및 <u>그 세대원</u>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u>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u>

현행		개정안	
〈신 설〉 아. (생략)		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카. (현행 아목과 같음)	
[별표2] 순천시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4조 관련)		[별표2] (제4조 관련) 순천시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4조 관련)	
시설구분	사업 및 기능	시설구분	사업 및 기능
순천시 청소년 성문화 센터	○ (생략)	순천시 청소년 성문화 센터	○ (현행과 같음)
	〈신 설〉		○ <u>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예방 교육 운영</u>
	〈신 설〉		○ <u>성인지적(성평등 등 포함) 통합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u>
	〈신 설〉		○ <u>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구축 관리</u>
	〈신 설〉		○ <u>지역 사회 내 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 허브 역할 수행</u>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072호
----------	--------

발의연월일 : 2019. 10. 11.

발 의 자 : 나안수 의원, 김병권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육성 및 지원(안 제3조)
-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경비 관리 등(안 제4조 ~ 안 제8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구성 지급 기준 등(안 제9조 ~ 안 제14조)
-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 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순천시 관내의 박물관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등록된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

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 감독)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 신설
-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점포의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대한 규정 신설
- 제2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 제21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동의를 철회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2019. 9. 11. ~ 10. 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1.(여성가족과-1975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30.(기획예산실-123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35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회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회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제2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현행	개정안
〈신설〉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에 의거 관련 제도 도입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과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제4조 ~ 제6조

(지급대상)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순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부칙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연도 공익수당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10. 1.)결과

건의내용	검토결과	비고
· 조례명칭을 농민공익수당, 어민공익수당 따로 동시 제정해야 함	미수용	
· 제4조(지급대상) - 지급대상을 경영체 등록자에 한정해서는 안 됨 (은퇴농업인,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고려해야함)	미수용	
·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구성원 15명중 농업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미수용	
·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 지급액을 반기별 30만원에서 분기별 30만원	미수용	
· 제1조(목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문구 삭제 ※ 공익적 기능 증진 문구 강조	수용	
· 제4조(지급대상) 농가 개인별 지급요구	미수용	
·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③항 당연직위원 관련부서장 5명을 기획예산 실장, 농업정책과장으로 최소화 - 1.호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순천시의회에서”추천한 시의원 - 2.호 농어업관련“기관·단체의 대표”를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기관·단체 상세표기요구 - 4.호“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기 삭제	미수용 수용 미수용 미수용	
· 제12조(지급결정 절차) 지급신청과 지급결정시 이·통장의 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수용	

건의내용	검토결과	비고
·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반기별 30만원은 순천시 재정여건 및 농업예산 15%약속 고려 다소 실망스러운 금액	미수용	
· 제4조(지급대상) 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	미수용	
·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반기별로 30만원 이내”금액을 균등하게 지급을“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로 수정요구	수용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30.(여성가족과-19653호)

※ 개선의견 : 본 제도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다수의 여성농민이나 청년농업인의 정책 소외가 우려됨.
단,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자(배우자 포함) 우선대상 선정 등으로 유보조항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9. 5.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9.(기획예산실-1134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09호)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인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동물자원과장, 산림과장, 순천만보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 · 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수당 지급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지급신청)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마을아·통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결정 절차) ① 마을아·통장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여러 명으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순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14조(지원제외)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15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어·업 인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이행)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독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연도 공익수당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경영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주소					
분야	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			주요생산품목	영농규모	
경작·사육 (농업, 임업포함)					(㎡)	
가축 등 사육 (축산업)					(마리수)	
어업					(톤)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이·통장	(인)	
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부()						
“여” 일 경우	중복 신청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및 실 경작 또는 사육 여부 : 여(), 부()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 첨부 : (공통) 의무이행서약서 1부 (해당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공부 1부(□에 √ 표시)					수수료	없음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부()						
“부” 일 경우	사망말소	월 일	전출	월 일	전출지역	
② 신청인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부()						
“○” 표시	쌀·밭·조건불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기타 공부상 확인		
③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부()						
“여” 일 경우	중복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부()						
“여” 일 경우	제외사유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농민수당 지급, 교육 · 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민수당 지급, 교육 · 홍보 등의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대법원, 국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기관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 · 안내, 지급 대상자 선정 · 심의, 사업 시행 · 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의 무 이 행 서 약 서

-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기본의무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공익수당을 지급받고 기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순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제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의무이행(조례 제16조) >

○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 대상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 하되, 순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어업인 공익적 가치 대한 보상금(공익수당)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50,392,900	-5,592,9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세입(a)	-	-	-	-	-	-
세출(b)	50,392,900	5,592,9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30년)	4차년도 (2040년)	5차년도 (2050년)
합 계	50,392,900	5,592,9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국 비	-	-	-	-	-	-
도 비	18,000,000	-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시 비	32,392,900	5,592,900	6,700,000	6,700,000	6,700,000	6,70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1개 단위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
- 산 출 액(2019년) : 5,592,900천원
- 산출근거(2019년)
 - 농어업인 공익수당 : 300,000원(하반기분)×18,643농가 = 5,592,900천원
 - ※ 2019년 7월 1일 농업경영체, 어업신고 및 허가 현황기준
 - 대상 : 농업인(농업·임업·축산) 18,209농가, 어업인 434어가
 - 2020년 전남도 시행 예정 / 도비 40%지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 장 유희성(☎ 749-8666)
농업행정팀장 김구현(☎ 749-8667)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2019년 정부합동감사 시정요구사항인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사항 변경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료 책정 기준 변경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업인 편의증진을 도모

2. 주요내용

-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사항 변경
 - (제5조제5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다만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 시 업체 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료 책정 기준 변경
 - (제8조제1항)
 -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및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구입가격별 구간을 세분화하여 임대료 기준을 개선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보완 사항
 - (제5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수기에서 전산으로 변경된 내용 및 미사용 서식 삭제
 - (제5조제6항) 임대농기계 안전보험 가입 기종 확대
 - (제7조제4항)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예약 일정 및 시간 조정

○ 용어 개정

- (제13조) “운영위원회” ⇨ “심의위원회”,
- (제5조제4항) “임대농기계 망실” ⇨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 (제5조제5항) “작목별 작업여건” ⇨ “작목별 작업여건, 여성친화형 농기계여부”
- (제13조제3항제7호) “모범농가주” ⇨ “여성농가주를 포함한 모범농가주 2~3명”
- (별지 제5호서식) 서식에 성별기재란 추가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5. 관련부서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2019. 10. 1.)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23.(여성가족과-1922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30.(기획예산실-1094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15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기계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사용신청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한다”를 “임대사업소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 등 농업기계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때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농기계 망실,”을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작목별 작업여건” 다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여부”를 삽입하고, “실시한 후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람이 탈 수 있는 임대농업기계에”를 “동력농기계에”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외 부분 중 “2일전까지”를 “3일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8시까지”를 “9시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책정하여”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순천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를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같

은 항 각 호 외 부분 중 단서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농기계관련”을 “농업·농기계관련”으로,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모범농가주”을 “여성농가주를 포함한 모범농가주 2~3명”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당연히 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업무 담당 과장

제1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사용 신청 대장 (제5조 관련)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 g / 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의 장비 및 농업기계 운영 관리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u>농업기계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사용신청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한다.</u>	② ----- ----- ----- ----- 임대사업소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 등 농업기계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때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농기계 사업을 계속유지하기 위하여 <u>임대농기계 망실, 파손 내용년수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u>	④ ----- ---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 ----- ----- -----.
⑤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 <u>작목별 작업여건</u>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농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및 농기계 보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u>실시한 후 제 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⑤ ----- ----- <u>작목별 작업여건, 여성친화형 농기계여부</u> ----- ----- ----- ----- <u>실시하여야 한다.</u>
⑥ 시장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u>사람이 탈 수 있는 임대농업기계에</u> 대해서는 농업기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⑥ ----- <u>동력농기계에</u> ----- ----- ----- -----.

현행	개정안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임대농업기계 운반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u>2일전까지</u> 임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운송한다. 다만, 현장 도착은 사용개시 전일 오후 5시부터 사용개시일 오전 <u>8시까지</u> 로 하고, 회수는 임대만료일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운반 예정시간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3일전까지</u> ----- ----- ----- ----- <u>9시까지</u> ----- ----- ----- -----.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u>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u>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한다. ② ~ ⑦ (생략)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 ----- 「 <u>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u> 」에 따라 책정하여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u>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u> ② 위원회는 <u>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u>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u>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농기계 보유 또는 임차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u>	제13조(심의위원회) ① ----- ----- <u>순천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u> ② ----- <u>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u> ----- ----- -----. ③ ----- ----- <u>다만, 제 1호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u>

[illegible]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6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상위법 준용 가능 조문 삭제

2. 주요내용

- 행위의 제한 관련, “문화재보호법” 준용 가능 규정 삭제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항제5호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조항을 준용 가능하므로 삭제
 - ⇒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10. 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23.(여성가족과-1923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25.(기획예산실-121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43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낙안읍성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 낙안읍성의 경관을 해치거나 문화재 및 문화재구역내 시설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u>	〈삭 제〉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073호
----------	--------

발의연월일 : 2019. 10. 11.

발 의 자 : 김미연 의원

1. 제안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 하도록 명문화 하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자가 대행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바로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 생태수도 순천 및 정원도시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상(벽면)녹화를 의무화 하고,
-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사실상의 도로 중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사실상 통행로의 도로 폭 기준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혼선을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 등의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안 제18조 제2항 제5호)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자 변경(안 제21조 제4항 제2호)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대행한 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건축주에 2부 제출하던 것을 시장에게 바로 제출

○ 옥상(벽면)녹화 의무화 규정 추가(안 제26조 제5항)

- 국가, 지자체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옥상(벽면) 조경을 조경면적의 30% 이상 설치

○ 사실상 통행로의 도로 폭 기준 삭제(안 제27조 제1항 제3호)

○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준 추가(안 제33조2)

-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 실시
- 안내판, 안내지도 제작·설치, 수선·변경하는 경우 소요비용 일부 지원 등
-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인접한 가로 정비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 가능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제20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5조, 제20조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 등

제21조 제4항 제2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 시 시장에게 1부를 제출한다 ” 를 “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으로 한다.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한 옥상(벽면) 조경을 조경면적의 3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공모 당선작, 생육환경 상 불가능한 지역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제1항 제3호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폭 2.5m 이상의 포장된 사실상 통행로” 를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포장된 사실상 통행로” 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준) ①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규모·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관리자 현황, 역사성·장소성 등)·안내지도 등을 제작·설치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공지와 인접한 가로 정비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지원방법(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도와 시·군 간 부담비율 등),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규모 등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때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26조 제5항은 각종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 중인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 설></u> ③ (생략)	제18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u>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 등</u>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③ (생략) ④ 영 20조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대행자는 사용승인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시장에게 1부를 제출한다. 3. ~ 4. (생략) ⑤ (생략)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u>시장에게</u> 제출한다. 3.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한 옥상(벽면) 조경을 조경면적의 3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공모 당선작, 생육환경 상 불가능한 지역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 2. (생략)

3.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폭 2.5m 이상의 포장된 사실상 통행로

〈신 설〉

개 정 안

제27조(도로의 지정) -----

-----.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포장된 사실상 통행로

제33조의2(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준)

①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규모·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관리자 현황, 역사성·장소성 등)·안내지도 등을 제작·설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공지와 인접한 가로정비 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지원방법(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도와 시·군 간 부담비율 등), 정비 사업에 포함하는 규모 등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074호
----------	--------

발의연월일 : 2019. 10. 11.

발 의 자 : 김병권, 나안수, 김미연,
이영란 의원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지원 보조기준액을 정함으로써 매년 안정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스공급시설 등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보조기준액 신설(안 제5조2)
 -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내 지원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7조 제1항 1호 다목)
 -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조기준액 제한)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상하수도 관련 시설 및 건축설비 분야”를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조의2(보조기준액 제한)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1. 부대시설 가. ~ 나. (생략) 다. <u>상하수도 관련 시설 및 건축설비 분야</u> 라. ~ 아. (생략) 2.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u> 라. ~ 아.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075호
----------	--------

발의연월일 : 2019. 10. 11.

발 의 자 : 김병권, 나안수, 김미연
의원

1. 제안이유

-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만 납부하는 반면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개별 정화조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정화조 설치비용 차감 반영 (안 제21조 1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5조 / 환경부장관 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의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정화조를 설치하는 개별 건축물은 정화조 설치비용의 일부를 차감 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제4호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을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신 설>	라.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정화조를 설치하는 개별건축물은 정화조 설치비용의 일부를 차감 할 수 있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개선
- 자치법규 상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 보호

2. 주요내용

-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 개정
 - 제5조 제2항(점용료등의 징수시기) : “사력” ⇒ “자갈”
-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 보호
 - ⇒ 반환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미 반환 규정 정비
 - 제7조 제2항(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30.(기획예산실-10941)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6.(순천시 공고 제2019-1550호)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력”을 “자갈”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생략) ② 토석, 사력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갈-----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목적, 근거 법령 개정(안 제1조~제3조, 제5조)
- 감사 제외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안 제5조, 제7조)
- 감사반 구성시기 삭제 및 감사반원 인원수 확대 개정(안 제8조)
- 감사운영 방법 등에 따른 외부감사반원 인원수 확대 개정(안 제9조)
- 감사결과 처리기간 연장 및 조치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7. 23. ~ 8. 1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7. 17.(여성가족과-1514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7. 19.(기획예산실-908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22.(순천시 공고 제2019-1370호)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9조제2항”을 “제9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59조제4항”을 “제9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01조제1항제7호”를 “제102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를 삭제하고, “7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5명 이내”를 “7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공동주택 감사를 청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 -----
제2조(감사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순천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2조(감사대상)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 ----- ----
제3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조(감사요청) ① ----- ----- 제93조제2항-----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실시) ① (생략)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93조제4항----- ----- ③ ----- ----- ----- -----

현행	개정안
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 5. (생략) ④ (생략) 제7조(감사방법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사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장 및 간사를 포함한 감사반을 7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9조(외부감사반원 위촉 등)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반원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1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에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 2.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감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02조제2항제7호----- 제8조(감사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반장 ----- ----- 10명 이내-----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외부감사반원 위촉 등) ① ----- ----- ----- ----- 7명 이내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사결과 처리) ① ----- ----- ----- 15일 이내----- ----- ② ----- ----- ----- ----- 30일 이내 ----- -----

현 행	개정안
③ (생략) 〈신 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u>④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 <u>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한옥에 대한 정의 개정(제2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5.(기획예산실-980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22.(순천시 공고 제2019-1515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u>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u> 을 말한다. 2. ~ 8. (생략)	제2조(정의) ----- -----. 1. “한옥“이라 함은 <u>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u> 을 말한다. 2. ~ 8. (현행과 같음)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맞춰 개편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차고지 면제대상의 구체적 기준(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10. 1.) 결과 : 의견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30.(여성가족과-1965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6.(기획예산실-11305)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0.(순천시 공고 제2019-1726호)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제3조 중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T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u>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u> :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 제3조제3호에 따른 <u>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u> 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u>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u> :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제3조(면제대상) <u>개인택시운송사업자</u> 및 <u>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u> 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대상) ----- <u>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u> 중 최대적재량 1.5T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6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
- 하위법령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1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 제14조를 삭제한다.
- 제18조 제목 및 각호 외 부분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7. ~ 9.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8. 27.(여성가족과-1754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14.(기획예산실-1025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6.(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공고 제2019-12호)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및 각호 외 부분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출자) ① (생략)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계리한다</u> . ③ ~ ④ (생략)	제11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회계처리</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u>계리</u>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8조(<u>회계처리</u> 상황의 보고) ----- ----- <u>회계처리</u> ----- ----- ----- -----. 1. ~ 5. (현행과 같음)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6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MICE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
-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여 사용자의 권익 보호

2. 주요내용

- 제 13조(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순천시’로 개정
- 제 18조(사용료의 반환)
 - ‘납부한 사용료가(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8. 20.(여성가족과-1705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6.(기획예산실-9884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2.(순천시 공고 제2019-1493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순천시”로 한다.

제18조 각호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 2. ~ 4. (생략)	제13조(사용료의 면제) ----- ----- -----. 1. ----- 순천시가 ----- ----- 2.~ 4.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제1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6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반환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습지 사용료 미 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개정
- 순천만습지 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으로 사용자 권익 보호

2. 주요내용

- 제19조(사용료의 반환)
 -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2019. 7. 31. ~ 8.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8. 5.(여성가족과-1629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7. 24.(기획예산실-928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31.(순천시 공고 제2019-1391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 1. ~ 4. (생략)	<u>제1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